행정사회분과위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 2015-456 호
의 결 연월일	2015. 11. 09. (제 회)

의 결 사 항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교육부 장관 황우여
제출연월일	2015. 11. 09.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1

□ 요　약 ····· 1

Ⅱ. 규제심사안 ····· 2

1.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등 ····· 2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등 * 신설 * 법률 제15조 제1항		○ 국가진로교육센터 경비 지원 -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진로점담교사 연수에 관한 경비지원 -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Ⅱ. 규제심사안

1.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등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국가진로교육센터 경비 지원
-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진로점담교사 연수에 관한 경비 지원
-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진로교육 관련 공공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진로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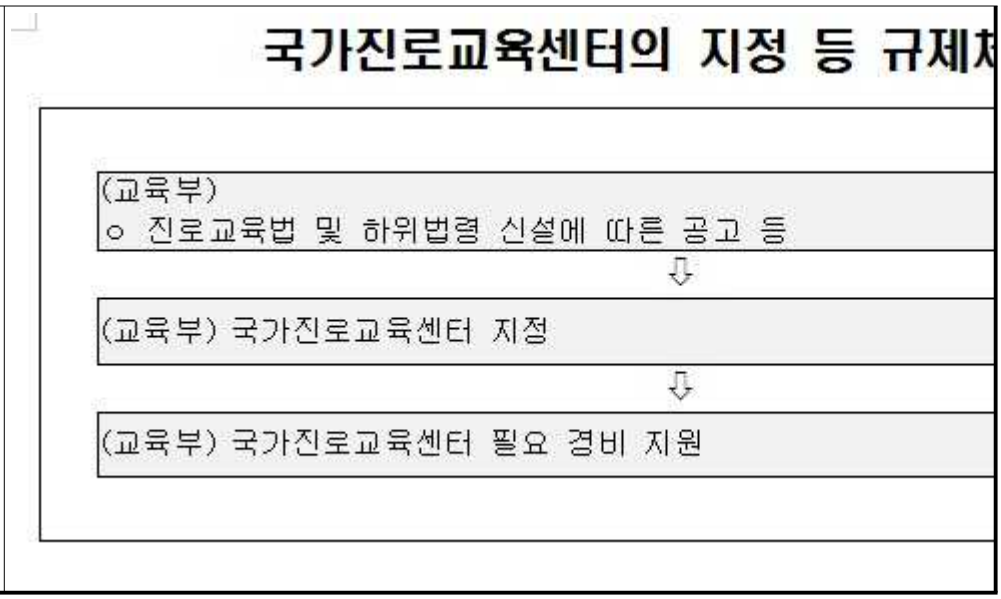
	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실적 등 진로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 2. 국가진로교육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3. 진로교육 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진로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재지정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진로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2. 진로전담교사 교육에 관한 경비 3.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⑦ 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 및 회계의 상황에 보고 요구 2.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에 관한 지도·권고 ⑧ 교육부장관은 국가진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⑨ 교육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 등</td><td>등록번호</td><td colspan="3">1000080459</td></tr>
<tr><td>규제사무명</td><td colspan="3">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등</td></tr>
<tr><td rowspan="2">2. 구분</td><td>등록변경사유</td><td>신설</td><td>등록단위</td><td></td></tr>
<tr><td>성격별분류</td><td>행정적규제</td><td>유형/구분</td><td>기타1</td></tr>
<tr><td rowspan="3">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소관부처</td><td>교육부</td><td>제안부처</td><td>교육부</td></tr>
<tr><td>담당부서</td><td>진로교육정책과</td><td>처리기관</td><td>중앙행정기관(본부)</td></tr>
<tr><td>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3">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 이창준 사무관(044-203-6226)</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4">진로교육법 제15조 제1항</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4"><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진로교육 관련 연구·행정단체</td><td>공공기관 316개 등</td><td>협의회 공청회(예정)</td><td>이견없음</td></tr></table></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4">-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규제 존속기한은 설정하지 않음</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td><td colspan="4">- 신설(강화)규제내용
ㅇ 국가진로교육센터 경비 지원
-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진로점담교사 연수에 관한 경비지원
-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td></tr>
</table>

8. 규제체계도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등 규제체 (교육부) ○ 진로교육법 및 하위법령 신설에 따른 공고 등 (교육부)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교육부) 국가진로교육센터 필요 경비 지원

규제영향분석서(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등)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 등</td><td>등록번호</td><td colspan="3">(신설규제)</td></tr>
<tr><td>규제사무명</td><td colspan="3">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등</td></tr>
<tr><td rowspan="2">2. 구분</td><td>등록변경사유</td><td>신설</td><td>등록단위</td><td>주규제</td></tr>
<tr><td>성격별분류</td><td>행정적규제</td><td>유형/구분</td><td></td></tr>
<tr><td rowspan="3">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소관부처</td><td>교육부</td><td>제안부처</td><td>교육부</td></tr>
<tr><td>담당부서</td><td>진로교육정책과</td><td>처리기관</td><td>중앙행정기관(본부)</td></tr>
<tr><td>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3">진로교육정책과 이창준 사무관(044-203-6226)</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4">진로교육법 제15조 제1항(국가진로교육센터)
진로교육법시행규칙 제3조 제7항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운영·지원)</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4"><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진로교육관련
연구 · 행정단체</td><td>공공기관 316개 등</td><td>협의회
공청회(예정)</td><td>이견없음</td></tr></table></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4">-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규제 존속기한은 설정하지 않음</td></tr>
<tr><td>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td><td colspan="4">ㅇ 국가진로교육센터 경비 지원
-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진로점담교사 연수에 관한 경비 지원
-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td></tr>
<tr><td>8. 규제체계도</td><td colspan="4">(교육부)
ㅇ 진로교육법 및 하위법령 신설에 따른 공고 등
⇩
(교육부)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
(교육부) 국가진로교육센터 필요 경비 지원</td></tr>
</table>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진로교육법이 제정**('15.6.22.공포, '15.12.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수준의 진로교육을 추진할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야 함

○ 현재 진로교육센터는 **1999년 대비 연구·사업 예산**이 **약 27배 증가**하였으나, 그 연구·사업의 예산 구성은 **특별교부금**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

○ 이에 국가수준의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중앙-지역, 지역-지역을 연계하는 진로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실시할 **중앙 진로교육기관이 부재**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수요에 발맞추어 체계적·종합적으로 국가진로교육 지원 역할 담당이 필요하며,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안정적인 업무 수행 기대

○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재정적, 질적으로 안정적인 진로교육 인프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 위탁 및 특별교부금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현재 진로교육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수준의 체계적·지속적·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할 진로교육 기관 수립**

☞ **【참고】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주요 업무**

- 진로교육법 8조에 따른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 커리어넷(www.career.go.kr) 등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 직업흥미, 직업적성, 진로성숙도, 직업가치관 등 진로심리검사 개발
- 커리어넷을 통한 사이버진로상담, 또래상담, 진로상담위원 연수 등 진로상담 지원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 미래의 직업세계(직업편, 학과편), SCEP(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STP(진로전환기 진로지도 프로그램),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등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 진로전담교사 교육
-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
-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국가수준의 진로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하여 **민간의 다양한 진로교육 관련 서비스 및 연구 발전 저해 가능성** 존재

○ 현재 **민간진로교육**은 직업학원 등 주로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진학 이외의 진로 서비스는 **미흡**

○ 이에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지역을 연계하는 **중앙차원의 국가 진로교육센터의 필요성 대두**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신설되는 규제로 현재 국가차원의 진로교육센터가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현재 진로교육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이 위탁사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안정적인 정책 추진에 제약**

○ 또한 각 지역교육청 및 학교 등과의 원활한 협조가 어려우며, 교육청 및 학교장에 의지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탁 계약 및 특별교부금 방식이 아닌 **중앙-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할 필요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핀란드 사례(국제교류센터(CIMO))
- 교육훈련 대상자의 정보 수집·가공·보급 역할 수행

- 진로지도상담자 및 실무자 연수 제공
- 교육훈련의 국제교류 촉진

○ 프랑스 사례(국립 노동 및 직업지도 연구원(INETOP))
- 진로심리검사 개발
- 진로상담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및 평가
- 직업 및 사회적 현상에 대한 연구보고서 출간

< 위임근거 검토 >

○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제3항에 의해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됨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 현재는 진로교육센터(교육부 「진로정보센터」('99.8월) 직능원에 지정·개소함.)를 운영하고 있으나,
- 현재는 진로교육센터의 정부에 의한 위탁 방식으로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이외의 별도 대안은 없음**
- 현재 형식의 진로교육 정책 추진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중앙-지역, 지역-지역 등의 연계에 한계 노출**

☞ **【참고2】 진로교육센터 현황**

▶ (설립목적)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 중 직업교육 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하 기관을 지정

▶ (조직) 5개 본부, 13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평생직업·진로교육연구본부의 '진로교육센터',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2개 센터에서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업무 수행

▶ (인력 및 연구·사업 예산 규모) 진로교육센터 21명(박사급 6명),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12명(박사급 5명)

< 현행유지안 >

○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 민간 진로교육 학원 및 컨설턴트 등의 활성화

- 현재 민간진로교육은 직업학원 등 주로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입시 이외의 **진로 서비스는 미흡함**
- 개별 직업학교 및 취업컨설턴트가 초·중등학교부터 진학(입시) 외의 진로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공공성·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

1-2) 최적대안의 선택

○ 민간 진로교육 학원 및 컨설턴트 등의 활성화는 **중립성·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상업적 이용 가능성 우려)**

○ 현재 진로교육센터 형식의 진로교육 정책 추진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낮고,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국가수준의 진로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진로교육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최적일 것으로 예상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건비 등 제반사항 마련을 위한 재정부담 있음.(특별교부금 또는 국비 등)

□ 편익분석

○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진로심리검사, 적

성검사, 진로상담,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체계화·종합화

○ 중앙-지역, 지역-지역간의 원활한 업무 연계 및 정보공유 가능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진로교육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TF팀 운영('15.6~)

○ 진로교육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부내 TF 회의 개최('15.7.20)

○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및 협의회 개최('15.7.28, 교육부 개최)

2) 집행자원 및 능력

○ **진로교육법 제정('15.6.22 공포, 12.23시행)**에 따라 신설이 아닌 진로교육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연구비, 연수비 등은 특별교부금, 국비로 충당 가능(현재 일부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중)

라. 기대 효과

○ 국가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수준의 진로교육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증가하고 있는 진로교육의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지속적·종합적 정책** 사업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참고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성격, 기능, 구성, 운영**

□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성격

○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국가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 지속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센터

○ 중앙-지역, 지역-지역 간을 연계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 국가진로교육센터의 기능

○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제공**

-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진로정보망 운영, 진로상담 지원,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진로전담교사의 교육을 수행함

○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의 질 관리**

- 진로교육의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며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및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함

□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운영**

○ **(기본 역할)** 국가 진로교육정책의 수행을 위해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그리고 국내·외를 연계

○ **(지원 역할)**

- 연계를 위해 국가진로교육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교육부의 사업계획의 수립을 지원
-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교육부의 진로교육 관련 사업관리가 원활하도록 지원
- 진로컨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지역진로교육센터가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컨텐츠 개발·보급하도록 지원
-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지역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운영 지원에 대한 지원

<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운영 개요>

